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
특 별 위 원 회

II

특별위원회 활동 방향

①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지원

-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
- 충청권 4개 시·도의회, 충청광역연합의회, 대한민국시도의회 (의장협의회, 운영위원장협의회)등 지방의회 유관 기관과의 문제의식 공유, 각 기관별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 건의안 제안 등을 통한 공조 체계 구축
- 관련 현안 국가계획에의 반영 건의를 위한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
- 5분발언, 기고, 도의회 홍보 콘텐츠(SNS, 유튜브) 등을 활용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촉구에의 관심 제고 및 지원 요청
-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간담회 · 토론회 개최

② 청주국제공항 기반 시설 확충 지원

- 공항 여객터미널, 주차장 확대, 제2주차빌딩, 주기장 등 공항 기반 시설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
- 기반 시설 확충 계획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중앙정부 등에 추가 건의 및 대책 마련 촉구
- 청주국제공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관계자, 도민, 공항 이용객들의 의견수렴, 대안 제시 및 정책 반영

③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 노선 개설 지원

-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개설 지원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
- 청주공항 운항 항공사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
- 인바운드 관광객 확보·유치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재정지원 방안 및 공항 연계 관광상품개발 발굴

④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 지원

-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
- 공항 인지도 상승 및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방안 강구

⑤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 지원

- 청주기지(군 공항)·청주공항(민간 공항)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
- 도민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간담회·토론회 개최
-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 대안 연구 및 제안

⑥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지원

- 지역별 항공화물 취항 현황 비교 분석 및 시사점 검토
- 청주공항 항공화물 취항 여건 조성 및 취항 방안 모색

III

세부 활동 계획

일 정	활 동 사 항	비고
2024년 하반기 (10월~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위원회 사전간담회 개최('24.10.22.) • 활주로 신설 촉구 국회 성명발표 참석('24.11.14.) •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('24.12.10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	
2025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(수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위 활동상황 점검 및 추진사항 협의 • 특별위원회 회의(3~10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-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관련 건의안 제안 등 • 사업 추진현장 방문 • 유관 기관 방문 • 선진지 견학(벤치마킹) • 정책토론회 / 간담회 개최 • 각종 공항 활성화 관련 행사 참여 	
2026년(~'26.2.28.) *필요시 특위 활동기간 연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(수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위 활동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• 특별위원회 회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•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(본회의) 	

※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V

행정사항

소관부서	주요내용	비고
총무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각종 행사 시 차량 지원 등	
홍보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sns 채널 등 홍보 콘텐츠 활용한 홍보 지원• 사진·영상 촬영 지원	
의사입법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회의 속기 및 기록 관리	
의회운영전문위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회의장 관리, 회계 처리	
충청북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관련 부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	

참고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9월 20일 (제420회)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제 안 자	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9월 2일

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9월 2일

발의자 : 운영위원장

1. 주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 규정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해 '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'를 구성한다.

나. 동 위원회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관련 업무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의 종합적 검토 및 다각적 정책방안 마련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다.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및 공항 기반시설 확충,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,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, 전략적 홍보 강화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지원을 한다.

라.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8명 이내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되, 필요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마.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수요 회복으로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대 시설이나 주차장 문제 등 여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공항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함.

나.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, 공항 기반 시설 확충, 국제선 다변화 및 신규노선 개설, 전략적 홍보 강화, 빈시간 슬롯(Slot)*의 활용도 제고, 공항 주변지역 균형발전 방안, 화물수요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.

* 특정날짜 및 시각에 항공기 이·착륙 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

다. 또한, 청주국제공항 현황과 이용권역, 항공노선·공항시설 등 청주국제공항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제2항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」 제35조, 제38조, 제39조

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

제35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3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39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

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.

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